

의안번호	2215616
의 퇴 인	김승원 의원
회 답 일	2026.02.02.
추계번호	25C747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③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700만원(연평균 4,1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53	—	—	—	—	53	10.6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11	11	11	11	11	57	11
평가지침 마련(안 제11조)	47	—	—	50	—	97	19.4
합계	112	11	11	61	11	207	41

주: 1.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인해 합계와 세부내역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국가등의 책무 등)	(제1항) 국가등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등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국무총리는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0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제1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제7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재량규정
		(제8항)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4	안 제11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	(제1항)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5	안 제12조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3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원과 전문강사 등 각 인력 유형별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1항)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5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소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국가등의 책무 등)	×	· 제정안은 국가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에 따른 국가 등의 정책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권고적 의미의 조항으로 추계가 곤란함
2	안 제8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10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 ×	· 제정안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이 설치되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이 배치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4	안 제11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평가)	○	
5	안 제12조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안 제13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안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안 제15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각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¹⁾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교원 양성, 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 중임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2조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안 제13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안 제14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안 제15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	· 조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의 정의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나,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활용 능력 및 비판적·합리적 사고 능력 함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그 목적 및 범위가 유사함 · 따라서,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의 확대·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만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디지털 소양 ²⁾ 을 반영하고, 기초소양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음 ³⁾ *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례 현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①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③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 마련(안 제1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8조) 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 안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연구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함
 - － 연구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0조) 소속 위원의 참석 수당 외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추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

3)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2021.11.24, 13p

- (안 제11조) 정부가 성과·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수행한 정책연구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
 - 안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연구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국회 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비 외에 자문, 자료 제작,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지침을 3년마다 재검토한다고 가정⁴⁾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300만원으로 추계
- 관련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

[표 2]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사례

(단위: 백만원)

주제	기관명	연도	연구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교육부	2021	27
도서관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65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3	54
전국민 디지털미디어 활용 역량제고 방안	"	"	40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② ~ ④ (생략)

[표 3]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53	-	-	-	-	53	10.6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위촉위원 수에 단가와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동안 5,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위촉위원 수) 제정안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성원 25명 중 19명으로 함⁵⁾
- (단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30만원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 동 지침은 위원회 참석비를 1일당 15만원 내로 하되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 5만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최근 5년간 변동된 바 없음
 - 아울러 동 지침은 사전 자료수집, 안전 검토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및 원격지 참석 경비 등을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여 30만원으로 함
- (회의 횟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준용하여 연 2회로 함

[표 4] 추계결과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촉위원 수(A, 명)	19	19	19	19	19	-	-
단가(B, 만원)	30	30	30	30	30	-	-
회의 횟수(C, 회)	2	2	2	2	2	-	-
추가재정소요 (D=A×B×C, 만원)	1,140	1,140	1,140	1,140	1,140	5,700	1,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안 제10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 ⑨ (생략)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가지침 마련(안 제11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정부가 성과·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수행한 정책연구 비용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9,700만원으로 추계
 - 관련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

[표 5]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연구 사례

(단위: 백만원)			
주제	기관명	연도	연구비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측정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1	40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정비	기획재정부	2022	40
미디어다양성 증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	54
데이터기반 성과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	2025	36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표 6]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평가지침 마련(안 제11조)	47	-	-	50	-	97	19.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2025.6.5.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0.7.5.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¹⁾	2024.9.26.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2025.4.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5.2.2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2023.4.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4.3.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3.10.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1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5.2.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2.2.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7.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2021.2.18.
전라남도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8.1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3.10.12.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0.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2021.12.17.

주: 1)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가 2024.9.26.자로 폐지되고 해당 조례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